





## 제9장

### 산업재해 대책

탄광근무자 직업병 대책에 관한 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

산업재해 예방 대책(안)

## 탄광근무자 직업병 대책에 관한 건

대한석탄공사 / 1952 / DA0417642

1952년 7월 8일 대한석탄공사 총무부장이 대한석탄공사 총재에게 보낸 <탄광노무자 직업 병 대책에 관한 건>으로, 대한석탄공사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석탄산업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① 생산이 진행될수록 노동대상이 체감하는 마모성 산업이며, ② 석탄이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집중해 있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이 큰 산업이며, ③ 지질 탐사에서 시작해 채탄, 수송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는 장기적 산업이며, 미래의 수익성이 확실치 않아 투자를 꺼리는 산업이며, ④ 또한 철도, 도로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자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산업이다.<sup>208)</sup>

탄광노동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노동강도가 높으며, 작업환경도 열악하고 위험하다. 낙반, 붕락, 운반, 출수, 화약발파, 화재 등의 재해가 발생하는 위험한 작업이다. 노동과정에서 탄광노동자들은 간내 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간내 작업 과정에서 발병하는 ‘죽음의 병’, ‘저주의 병’으로 일컫는 진폐증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산업재해병이었다.<sup>209)</sup>

문서는 1952년 7월 8일 대한석탄공사(이하 석공) 총무부장이 석공 총재에게 보낸 문서로, 1950년대 전반기 광산노동자들의 직업병 현황이나 직업병에 대한 대책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문서에서는 “각 광업소 현장을 순회조사한 결과 간장(坑長)을 위시해 십수 년 채탄 굴진 등 기술부문에 종사해 현재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원 及 광부의 다수가 탄광 직업병인 규폐 탄폐에 걸려서 당장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혹은 미구에 직무를 감당치 못하게 될 경향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此 직업병은 채탄 및 굴진에 종사하는 광부가 규사분 및 탄분을 흡입함으로서 발생하는 탄광 고유의 직업병으로서

208) 정현주, 「석탄산업의 탄광노동자계급의 성장과 쇠퇴」, 『지역사회학』 제5권 제2호, 2004, 82~83쪽.

209) 삼척시립박물관 편, 『탄광촌 사람들의 삶과 문화』, 민속원, 2005, 243쪽.

규사분 및 탄분을 계속 흡입하면 폐포(肺胞)가 점차 소멸되어 종말에는 폐조직이 사멸되고 혈관이 파열되어서 흔히 폐결핵에서 보는 병상적(病狀的)인 변화를 야기케 되며 또한 규탄폐에 ○병(○炳)하면 거개(舉皆)가 폐조직의 악화를 초래해 폐결핵을 병발(併發)하게 되는 것이 실정”이므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탄광직업병 긴급대책으로 “각 광업소에 X선을 설치하는 동시에 일정기간 기술자를 고빙(雇聘)해 조사반을 조직하고 각 광업소를 순회해 일제히 보건상태를 조사한 후 건강자에 대해는 사전미연방지에 노력하는 동시에 병자에 대해는 긴급히 적절한 치료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① 중환자에 대해는 공상(公傷)으로 인정해 직시(直時) 휴양케 한다 ② 경환자에 대해는 즉시 노무장소를 변경하는 동시에 공상(公傷)으로 시료해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보호한다 ③ 정기적으로 X선 검진을 행해 항시 노무자의 보건상태를 조사한다 ④ 굴진부에 있어서 마스크의 착용을 장려한다 ⑤ 건식 굴진을 점차 습식 굴진으로 전환토록 한다 ⑥ 경환자가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장소에는 하시(何時)든지 대치할 수 있도록 부책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폐증이라는 직업병은 1960년대만 해도 당시 노동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sup>210)</sup> 문서에서 나타나듯이 1950년대에 이미 탄광노동자들 뿐 아니라 정부도 탄광 직업병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책 수립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0) 이홍석, 「1960년대 전반 탄광촌의 현실과 탄광노동자의 대응」, 연세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21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

총무처 / 1963 / BG0000369

1963년 8월 보건사회부 장관이 각의에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이다. 전문 37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민주당 정부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사회보험법은 제정되지 못했다. 1962년 2월 20일 각령 제469호로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각 전문 분야별로 사회보장제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뒤 1963년 3월 27일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는 전문 39조로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을 작성해 법제처에 회부했다. 9월 1일 노동청 발족과 동시에 직업안정국에 산재보상과를 두어 이를 전담하도록 했으며, 10월 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은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통과되었다.<sup>211)</sup>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그 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에는 단체협약에 의해 재해를 보상했다. 그리고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법조항에 따라 재해를 보상했다. 근로기준법은 재해보상에 대한 규정으로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제80조(장해보상), 제81조(휴업보상장해보상의 예외), 제82조(유족보상), 제83조(장사비), 제84조(일시보상), 제85조(분할보상), 제86조(보상청구권),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88조(사회부의 심사의 중재),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제90조(민사소송), 제91조(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제92조(서류보존)를 두었는데, 이러한 법조항에 따라 재해를 보상했던 것이다. 즉 재해보상제도는 단체협약시대를 거쳐 근로기준법에 의한 개별사용자 책임제로 변화했으며, 1963

211) 노동청, 『노동행정 10년사』, 노동청, 1973, 252~253쪽.

년에 이르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근대적인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었다.<sup>212)</sup>

문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자세히 파악할 수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안 이유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사회부장관이 보험사업을 관掌하게 했다. ②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중 각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했다. ③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양급여, 장해(障害)급여, 유족급여, 장제(葬祭)급여 및 일시급여로 했다. ④ 보건사회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

212) 노동청, 『노동행정 10년사』, 노동청, 1973, 252쪽.

## 산업재해 예방 대책(안)

재정경제원 / 1986 / BA0000166

1986년 2월 10일 전두환 대통령이 노동부 업무보고 때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며 범국민적인 운동을 지시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노동부장관이 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산업화 진전에 따라 각종 화학물질이나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산업재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 11월 5일 법률 제1438호로 제정되어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처음에는 500인 이상 규모의 광업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이후 사업체 규모와 업종이 확대되었다.

1977년부터 1986년까지 사업장·근로자 및 재해자의 변화추이를 보면 1977년을 기준연도로 지수 100으로 설정할 때 1986년도에는 사업장이 182.5, 근로자가 179.5이고, 재해자는 120.4로 사업장과 근로자는 계속 증가한 데 비해 재해자는 120.4로 0.2포인트 증가했다. 재해 발생 현황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체 재해의 56.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건설업 23.8%, 운수보관업 9.0%, 광업 7.5%, 기타 산업 3.3%, 전기·가스·수도업 0.2% 순이었다.<sup>213)</sup>

1986년 2월 10일 전두환 대통령은 노동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매년 수천 억에 달하는 산업재해는 인명 손실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만큼 범정부적 차원의 산재예방대책을 강구,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sup>214)</sup> 산업재해는 본인과 직장뿐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지시 이후 노동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했으며, 업무보고 때 그 결과물을 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 자료는 산업재해 현황, 문제점, 대책 순으로 작성되었는

213) 노동부, 『'86 산업재해분석』, 1986, 6쪽, 10쪽.

214) 『減員 요인 최소화 노력. 全 大統領 지시』, 『매일경제』 1986.2.11.

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 현황

- 산업재해 발생 빈도의 증가, 감소 반복으로 10여 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재해자 수는 매년 지속적 증가 추세
-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과 GNP에 대한 손실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

#### ○ 문제점

- 산업시설의 높은 유해·위험도 상존
- 노사의 산업재해 예방의식 저조
- 법령의 미비와 중복: 산업안전보건법 미비, 산재보험제도의 예방적 기능 결여, 안전관계 업무의 부처 간 중복이 많음
- 산재예방 행정체제의 취약
- 민간 전문단체의 조직 및 활동 부진

#### ○ 대책

- 산업재해 예방의식 제고: 안전교육의 조기 실시, 산재 예방 직장교육 강화, 산재 예방 홍보 강화, 산업안전의 활성화
- 유해·위험요인의 근원적 제거: 위험기계·기구 제조 허가제 도입, 유해물질 신고 의무화
- 산재예방체제의 합리적 개선: 산재예방 행정체제 강화, 종합안전관리체제 확립, 산재예방 투자 확대, 산재예방 전문단체 설립 검토
- 기업의 산재 예방 활동 지원 강화

또한 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개편, 직장교육 강화, 산재예방 홍보 강화, 산업안전의 생활화, 산재예방 행정체제 강화, 종합안전관리체제 확립, 산재예방 투자 확대, 산재예방 전문단체 설립 검토, 위험 기계 제조 허가제 도입, 유해물질 신고제 도입, 산재예방시설 자금융자 개선,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등 추진사업을 제시했다.